

재 수 영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	기관의 장
선	
람	

수 영 구 보 호외 제318호 2014.10.31(금)

고시 ○ 도로구간 변경 고시 ------ 2

○ 도로명 주소 고시 ----- 3

회				
람				

· 발행 : 수 영 구 · 편집 : 문화공보과 (610-4071~3)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 2014 - 84호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4년 10월 31일

수 영 구 청 장

- 1. 고시일자 : 2014. 10. 31.
- 2. 고시방법 : 수영구보, 구 홈페이지 등
- 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 사항(붙임 조서와 같음)

 합계		П		
합계	大路	路	길	
3	_	3	_	생성: 1건 변경: 2건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지정보과(☎ 610-476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4-83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10월 31일

수 영 구 청 장

○ 도로명주소 : 감포로 74 외 10건

▷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	도로명
(지번주소)		부여고시일	부여사유	고시일	부여사유
별지 참조(2건)					

▷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	변경사유		
해 당 없 음					

▷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종전주소(도로명주소)	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	폐지사유	비고(지번주소)		
별치 참조(9건)					

[※]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(☎051-610-4761)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(www.suyeong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10. 3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